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6-100 관련

제안년월일: 2026. 9. 11.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제출서류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제2항제4호의 “전기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전기설비 안전진단 보고서”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전기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전기설비 안전진단 보고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제6조(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제6조(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② 춤 허용업소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② ---------- ---------- ---------- ---------- ---------- ---------- ---------- ---------- ----------.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4. 「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전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1부	4. 「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진단 보고서 1부